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진행 중 이라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부부관계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사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누가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 등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갈등을 부부와 부모의 입장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 법원의 도움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상호 안정적인 협의안을 마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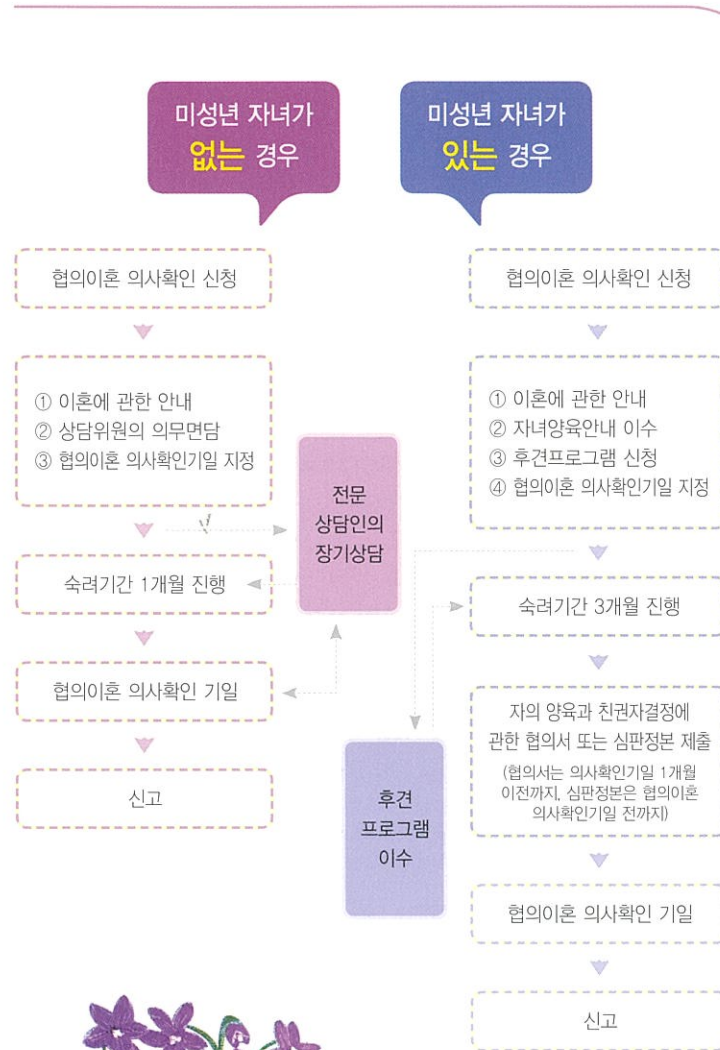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②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5조).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이혼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②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시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제출서류

의무/장기상담제도 · 후견프로그램 · 미성년 자녀양육 안내제도

협의이혼 속려기간 · 의사확인 기일

이혼신고 · Q & A · 외부상담기관 연락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 접수를 하여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협의이혼사건의 관할 안내

| 법원 | 관할구역 | 담당전화 |
|----------|---------------------------------|----------------|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02)2055-7341~2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02)2204-2110 |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2192-1184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02)910-3382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02)3271-1130~2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위 서류는 구청, 동사무소, 법원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과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소유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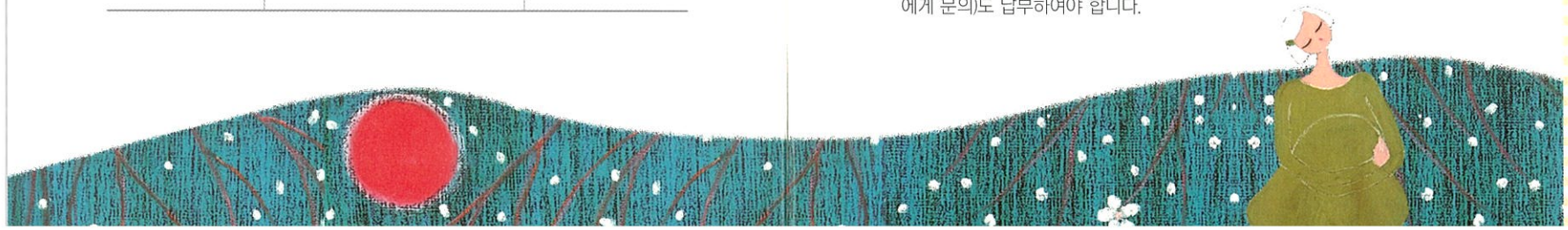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제출서류

의무/장기상담제도 · 후견프로그램 · 미성년 자녀양육 안내제도

협의이혼 숙려기간 · 의사확인 기일

이혼신고 · Q & A · 외부상담기관 연락처



의무면담제도와 장기상담제도는 무엇인가요?



의무면담제도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 대하여 이혼 과정 전후의 심리적·정서적 원조 등의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부상담 안내를 위한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상담위원의 면담을 거친 이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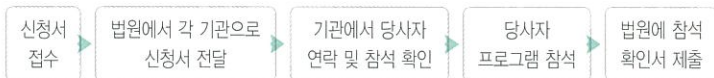
장기상담제도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가 부부상담을 원하는 경우 상담전문가와 장기간 상담을 10회(예외적으로 15회)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조정 및 원만한 이혼에 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부부들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후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부부는 숙려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1개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후견프로그램은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후견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제도는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843조, 제909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위 사항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반드시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안내

- 장 소 : 서울가정법원 207호 자녀양육안내실
- 날 짜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공휴일 제외) 매일 1회
- 시 간 : 오후 4:00부터 5:30까지

※ 주의사항

- ① 자녀양육안내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만 하고(그 기간 내에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숙려기간 3개월은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진행되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이 열립니다.
- ② 자녀양육안내는 부모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가 다른 날 참석하실 수 있으나, 그 경우 숙려기간은 뒤의 날부터 기산함)

※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부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 면제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에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1. 이혼 여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기

이혼을 꼭 결정해야 하는지, 부부의 갈등해결이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이혼 및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준비는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기

- 부모는 자녀의 충격이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에 협의하여 신중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해야 하며, 가능하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 앞에서 이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듯한 표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녀에게도 자신에게 닥칠 변화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부모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보살핌을 줄 것임을 자녀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양육에 관한 사항 협의하기

- 친권 및 양육자 협의 : 자녀의 행복과 안정적 양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 협의 : 이미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 또는 모가 자녀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것이라는 염려로 상당기간 관계를 단절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녀는 헤어진 부 또는 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분노로 인해 비행, 공격적 성향 등을 표출하거나 우울, 자신감 결여 등 내면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숙려기간 동안 반드시 면접교섭에 협조하시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비 협의 :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경제적 곤궁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녀의 상황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협의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가정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가의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사진이 뚜렷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 의사의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 의사가 있다면 회신이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보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보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하였어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 확인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Q & A

양육비부담조서는 무엇인가요?

-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는 철회할 수 있나요?

-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외부 상담기관 연락처

| 명칭 | 주소 | 전화 |
|-----------------|--------------------------------|----------------------------|
| 한스카운셀링센터 | 서울 노원구 상계2동 동암메이저아파트 104동 101호 | 02)977-4275 |
|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연구소 |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용산파크타워 103동 502호 | 02)793-6150 |
| 서울부부가족치료연구소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4-33 소소헌빌딩 2층 | 02)593-9915 |
| 햇빛트리니티 상담센터 |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 | 02)570-7115 |
| 서울여대 가족상담센터 | 서울 노원구 공릉동 126 | 02)970-5876 |
| (사)은행나무 부부상담연구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5 이레오피스텔 701호 | 02)3473-2240 |
|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금천구 시흥동 841 1층 건강가정지원센터 | 02)803-7741 |
|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서초구 양재1동 25 서초구민회관 2층 | 02)2155-8814 |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8 | 02)3412-2222 |
|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8-10 | 02)794-9184 |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8 | 02)471-0953 02)401-6812 |
| 강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59-4 | 02)2606-2015 |
| 성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 성동구 홍익동 무학로 6길 9 | 02)3395-9447 |

찾아오시는 길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홈페이지 : <http://slfamily.scourt.go.kr> / 전화 : 02)2055-7114 / 팩스 : 02)2055-7114

교통안내

- 지하철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에서 서초구민회관 방향으로 도보 3분(약 200M)
- 버스
 - 초록(지선)버스 : 마을 서초(08, 09, 18, 20)
 - 파랑(간선)버스 : 140, 405, 407, 408, 421, 440, 441, 462, 470, 471, 541, 8441
 - 초록(지선)버스 : 3412, 4432
 - 빨강(광역)버스 : 6501, 9100, 9200, 9201, 9300, 9404, 9408, 9500, 9501, 9503, 9510, 9711, 9800, 9802, M4403, M5414, M5422, M6405, M6410
 - 직행버스 : 500-2, 1005, 1005-1, 1151, 1251, 1311, 1550, 1550-1, 1551, 1560, 1570, 3000, 3002, 3003, 3007, 3030, 3100, 3101, 3200, 5001, 5001-1, 5002, 5003, 5006, 5100, 5300, 5300-1, 6800, 7501, 8101, 8131, 8201, 9004, 9600, 9700
 - 기타버스 : 11-3, 11-7, 917, 500-5, 3100-1
- 승용차
 - 강남쪽에서 오시는길 : 강남대로 성남 방향으로 양재사거리에서 우측 300M 지점
 - 성남쪽에서 오시는길 : 강남대로 강남역 방향으로 양재사거리에서 P턴 후 좌회전 300M 지점

이혼을 고민 중 이신가요?

-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의 사항인 신청 제출서류
- 의무/양기상담제도
- 후견프로그램
- 미성년 자녀양육 안내제도
- 합의이혼 숙려기간
- 의사확인 기일

